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736
----------	------

발의년월일 : 2021년 8월 31일

발의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2021.8.11일 김소양 의원이 발의(찬성자 15명)하여 2021.8.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92호)과  
2021.8.11일 최웅식 의원이 대표발의(발의자 9명, 찬성자 18명)하여 2021.8.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19호)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사유

- 의안번호 제2592호, 제2619호 개정안은 안 제34조제1항제11호에서 각각 동시에 중증장애인, 유출지하수와 관련하여 감면 조항을 신설함에 따른 호 번호 충돌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 제2592호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감면의 경우 신청에 의하지 않고 서울시가 일괄로 처리하기 위해 징수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2022년 5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  
(안 제34조제1항제12호)
- 유출지하수 이용 및 하천 직접 배출 등과 관련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 (안 제34조제1항제13호)
- 중증장애인 세대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의 경우 2022년 5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함. (안 부칙)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2호의 호 번호를 같은 조 같은 항 제14호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제34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

별표 2의 가목제2호 중 “업종 및 사용여부에”를 “업종 구분에”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p> <p>1. ~ 11.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12. 그 밖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p> <p>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관련)</p> <p>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p> <p>※ 비고</p> <p>1. (생략)</p> <p>2.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u>업종 및</u></p>	<p>제34조(감면) ① ----- ----- -----.</p> <p>1. ~ 11. &lt;현행과 같음&gt;</p> <p>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u>면제</u></p> <p>13.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 <u>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u></p> <p>14. &lt;현행과 같음&gt;</p> <p>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관련)</p> <p>가. &lt;현행과 같음&gt;</p> <p>※ 비고</p> <p>1. &lt;현행과 같음&gt;</p> <p>2. ----- <u>업종</u></p>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  
을 적용한다.

<부칙신설>

구분에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2호의 개  
정규정은 2022년 5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한다.